

제300회 강서구의의회 제2차 정례회
미래·복지위원회 제5차 회의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
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

2023. 11. 22.

서울특별시 강서구의의회
미 래 · 복 지 위 원 회

서울특별시 강서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2023년 11월 22일
전문위원 권 오 숙

1. 회부경위

- 가. 의안번호: 2023 - 150
- 나. 발 의 자: 최세진 의원 외 4명
- 다. 발의일자: 2023년 11월 10일
- 라. 회부일자: 2023년 11월 10일

2. 제안이유

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지 않고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에 중점을 두어 대상자가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상위법인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이 지난 2023.6.13.에 개정됨. 이에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강서구민의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가. 고독사 대상자를 1인 가구로 한정하는 문구 개정
(안 제1조~ 안 제3조, 안 제7조)

- 나.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기 발견과 사전 예방의 노력을 반영하고, 생애주기별 지원체계 마련 (안 제4조, 안 제5조, 안 제8조)
- 다.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교육 및 홍보 실시 (안 제9조)
- 라. 기타 상위법령에 따른 조문 정비 등

4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- 나. 예산조치: 필요시 반영
- 다. 해당부서: 복지정책과
- 라. 기 타: 입법예고(2023. 11. 10. ~ 11. 14.) 결과 의견 없음

5. 검토의견

가. 개정취지
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의 개정(2023. 6. 13.)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, 우리구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지원의 안정적인 추진을 도모하고자 함

나. 주요 개정내용

- 안 전체적으로 조례의 목적, 사용하는 용어, 조례의 적용범위, 지원 대상에 대하여 정비하였는데

- 이는 기존의 고독사가 1인 가구에 한정되어 있어, 문구 개정을 통해 단순히 가구 유형이 아닌 대상자의 사회적 고립 자체에 중점을 두고자 하는 것임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1인 가구의 증가로 인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소외·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2. “<u>사회적 고립가구</u>”란 가족·이웃·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<u>1인 가구</u>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<u>주소를 둔 1인 가구(거소지가 강서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)</u>에 대하여 적용한다.</p> <p>제8조(지원대상) 제7조의 지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</p> <p>1. <u>1인 가구 중</u>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</p> <p>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1인 가구</u> 중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에 따라 <u>소외되고 단절된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한다.</u></p> <p>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“<u>사회적 고립</u>”이란 <u>가족·이웃·친구 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상태</u>를 말한다.</p> <p>제3조(적용범위)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강서구에 <u>주소를 두고 실제 거주하는 주민에게</u> 적용한다.</p> <p>제7조(지원대상)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한다.</p> <p>1.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</p> <p>2.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<u>가구 중</u> 건강상태, 경제상태,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</p>

○ 안 제4조에서는 구청장 책무의 범위를 보다 확대하여 규정하였고

현 행	개 정 안
<p>제4조(책무)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사회적 고립가구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	<p>제4조(책무) ①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(이하 “구청장”이라 한다)은 <u>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</u></p>

	<p>② 구청장은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발생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 [신설]</p>
--	--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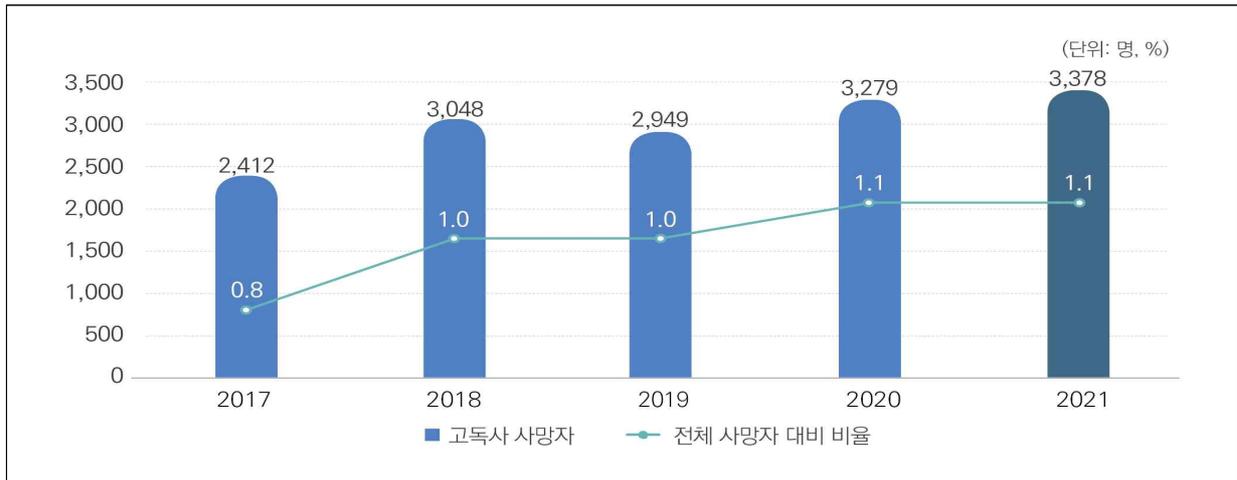
- 안 제5조에서는 추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는데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그치지 않고 고독사를 예방하고 사회적 고립가구의 안전망 확충까지 도모하고자 하였음
- 안 제8조에서는 지원 사업을 구체화하였는데,
 - 보다 실효성 있는 사업 추진을 위해 실태조사에 근거한 조기 발견 사업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사업을 신설하고
 - 다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무연고사망자에 대한 장례서비스 규정을 삭제하였음
- 안 제9조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필요한 교육과 홍보활동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음

다. 종합의견

- 본 조례안은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개정에 따라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 가구의 지원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비하여, 그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는 것임
-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에 근거하여 실시한 보건복지부 「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」에 따르면

- 최근 5년간 고독사 사망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, 1인 가구 증가에 따라 고독사 증가세도 계속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음¹⁾

< 최근 5년 간 고독사 발생 현황 >



- 또한 최근에는 종로구 창신동 모자 사건이나 수원 세모녀 사건 등 1인 가구가 아님에도, 가구 단위 사회적 고립으로 인한 일가족 사망 사건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현실을 감안하여
- 고독사의 기준을 ‘홀로 사는 사람의 죽음’에서 ‘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의 죽음’으로 변경하여 고독사 위험자의 범위를 확대 하고

1) 「2022년 고독사 실태조사」 개요

- 조사기간: 2022. 4월 ~ 2022. 12월 (약 8개월)
- 조사내용: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(정의)*에 따른 최근 5년간 우리나라 고독사 발생 현황
- (*① 가족, 친척 등 주변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, ② 자살·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, ③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)
- 조사방식: 경찰청으로부터 공유받은 형사사법정보(2017~2021년, 약 24만 건) 분석을 통해 법률상 고독사 요건에 부합하는 사례 추출
- 조사 주관기관: 한국보건사회연구원

- ‘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’ 뿐만 아니라, ‘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’까지 조기 발견하고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한 안전망을 확충하고자 하는 조례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사료되며
- 고독사와 사회적 고립이라는 복지 사각지대를 극복하고 사회적 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는 대응과 위기가구 발굴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

□ 「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“고독사”란 가족,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·병사 등으로 임종을 맞고,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. <개정 2023. 6. 13.>

제3조(국민의 권리와 의무) ① 국민은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도움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.

② 국민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수립·시행하는 고독사 예방정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, 고독사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(이하 “고독사위험자”라 한다)을 발견한 경우에는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.

제4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위험자를 고독사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.

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현황 파악, 고독사 예방 및 대응 등 각 단계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·시행하여야 한다.

제15조(고독사 예방을 위한 교육·홍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고독사 예방에 관한 국민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실시하여야 한다.